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42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신정훈 · 이해식 · 장종태
권칠승 · 윤건영 · 임호선
이병진 · 부승찬 · 양부남
차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매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의 상당 금액이 체납되고 있으며, '24년에도 1조 1,399억원의 과태료 체납금이 확인되며, 이 중 개인 체납자가 약 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 법규 위반자에 대한 이행 강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칙금·과태료 납부를 유도하여 범칙금·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제3호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6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갱신 제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1. · 2. (생략) <u><신 설></u>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한다.</u> 가. <u>제164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u> 나. 「 <u>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u> 」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